

직 인 관 리 규 칙 [1995. 4. 7 규칙 제11호]

일부개정 2002. 2. 14 규칙 제119호

2002. 8. 23 규칙 제121호(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)

2015. 4. 7 규칙 제299호(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)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 직인에 관한 사무 취급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5.4.7.)

제2조(종류) 직인의 종류는 연구원의 이사장 직인 및 원장 직인으로 한다.

제3조(규격과 문자배열) 이사장직인, 원장직인의 규격은 [별표1]에 의하며 문자 배열은 한글전서체로 새긴다.

제4조(직인의 등록) 주관부서는 직인대장에 연구원 직인을 등록보존하여야 한다.

제5조(보관·사용) ①연구원 이사장 및 원장직인은 서무담당부서에서 보관 사용한다. 다만, 각부서장의 직인은 필요에 따라 각 부서에서 따로 보관한다.

②(신설 2002.2.14) 삭제(2002.8.23)

제6조(조인) ①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 주관부서장은 [별지 제1호서식]의 직인 사용부에 소정 사항을 기입하고 조인할 문서와 관계기안문 내용의 합치 여부 및 전결의 상이를 확인한 후에 조인한다.

②주관담당 부서에서는 문서의 원본과 부분사이 및 문서가 2매 이상일때는 각장 사이에 간인을 날인한다. 다만, 계약서 추천서류등 중요문서에는 임원의 직인으로 한다.

③주관부서장이 조인을 마쳤을 때에는 기안문과 원본 및 부분에 날인을 확인 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) 주관담당부서에서는 조인문서의 원본을 시행하고 기안문과 부분은 기안부서로 회송한다.

제8조(기타)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 취급자 기타직원의 원내용 인장을 등록케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2. 2.14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(개정 2002.2.14., 2002.8.23.,2015.4.7)

직 인 규 격

직 인 명 칭	규 격	서 체	모 형
재단법인 경기연구원 이사장인	2.7cm×2.7cm	한글전서체	정방형
재단법인 경기연구원 원장인	2.7cm×2.7cm	"	"
경기연구원 재무담당인	2.0cm×2.0cm	"	"
경기연구원 물품관리관인	2.0cm×2.0cm	"	"
경기연구원 징수관인	2.0cm×2.0cm	"	"
경기연구원 일상경비 출납원인	1.8cm×1.8cm	"	"
경기연구원 수입금 출납원인	1.8cm×1.8cm	"	"

[별지 제1호서식]

직 인 사 용 부

년 월 일	사용자직성명	사용문서건명	직인구분	확 인